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22~22p (8) 1인의 안전관리자를 충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	개념, 공식-설명	<p>(8) 1인의 안전관리자를 충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p> <table border="1"> <thead> <tr> <th>위치 · 거리</th><th>제조소등 구분</th><th>개 수</th><th>인적조건</th></tr> </thead> <tbody> <tr> <td>동일구 내에</td><td>보일러, 냉난방설비를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7개 이상의 일반취급소</td><td>그 일반취급소에 공통한 위험물을 저감하는 저장소</td><td>7개 이하</td></tr> <tr> <td>동일구 내에 (일반취급소간 보행거리 300m 이내)</td><td>위험물을 차단되거나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5개 이상의 일반취급소</td><td>그 일반취급소에 공통한 위험물을 저감하는 저장소</td><td>5개 이하</td></tr> <tr> <td>동일구 내에 있거나 상호 보행거리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써 저장소의 규모는 저장소의 위험물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제56조)이 정하는 저장소</td><td>옥외탱크저장소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td><td>30개 이하 10개 이하</td><td>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동일구 내에 있거나 상호 보행거리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 써 저장소의 규모 저장 위험 물 고 행 정 안 전 부 령 (제 56 조) 이 정 하 는 저 장 소</br></td><td>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동일구 내에 있거나 상호 보행거리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 써 저장소의 규모 저장 위험 물 고 행 정 안 전 부 령 (제 56 조) 이 정 하 는 저 장 소</br></td><td>30개 이하 10개 이하</td></tr> <tr> <td></td><td>다음 각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5개 이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각 제조소들이 동일구 내에 위치하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을 것 각 제조소들에서 저작 또는 충분한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저장소 환경 3천배 미만인 것 다만 저장소의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선박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고정하기 위한 힘을 저감하는 저장소와 해당 선박주유취급소</td><td>5개 이하</td><td>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다음 각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5개 이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각 제조소들이 동일구 내에 위치하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을 것 각 제조소들에서 저작 또는 충분한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저장소 환경 3천배 미만인 것 다만 저장소의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선박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고정하기 위한 힘을 저감하는 저장소와 해당 선박주유취급소</td><td>5개 이하</td></tr> <tr> <td></td><td>수정 사유</td><td>표 이론 오류</td><td></td></tr> </tbody> </table>	위치 · 거리	제조소등 구분	개 수	인적조건	동일구 내에	보일러, 냉난방설비를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7개 이상의 일반취급소	그 일반취급소에 공통한 위험물을 저감하는 저장소	7개 이하	동일구 내에 (일반취급소간 보행거리 300m 이내)	위험물을 차단되거나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5개 이상의 일반취급소	그 일반취급소에 공통한 위험물을 저감하는 저장소	5개 이하	동일구 내에 있거나 상호 보행거리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써 저장소의 규모는 저장소의 위험물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제56조)이 정하는 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30개 이하 10개 이하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동일구 내에 있거나 상호 보행거리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 써 저장소의 규모 저장 위험 물 고 행 정 안 전 부 령 (제 56 조) 이 정 하 는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동일구 내에 있거나 상호 보행거리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 써 저장소의 규모 저장 위험 물 고 행 정 안 전 부 령 (제 56 조) 이 정 하 는 	30개 이하 10개 이하		다음 각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5개 이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각 제조소들이 동일구 내에 위치하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을 것 각 제조소들에서 저작 또는 충분한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저장소 환경 3천배 미만인 것 다만 저장소의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선박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고정하기 위한 힘을 저감하는 저장소와 해당 선박주유취급소	5개 이하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다음 각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5개 이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각 제조소들이 동일구 내에 위치하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을 것 각 제조소들에서 저작 또는 충분한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저장소 환경 3천배 미만인 것 다만 저장소의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선박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고정하기 위한 힘을 저감하는 저장소와 해당 선박주유취급소	5개 이하		수정 사유	표 이론 오류		<p>(8) 1인의 안전관리자를 충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p> <table border="1"> <thead> <tr> <th>위치 · 거리</th><th>제조소등 구분</th><th>개 수</th><th>인적조건</th></tr> </thead> <tbody> <tr> <td>동일구 내에</td><td>보일러, 냉난방설비를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7개 이상의 일반취급소</td><td>그 일반취급소에 공통한 위험물을 저감하는 저장소</td><td>7개 이하</td></tr> <tr> <td>동일구 내에 (일반취급소간 보행거리 300m 이내)</td><td>위험물을 차단되거나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5개 이상의 일반취급소</td><td>그 일반취급소에 공통한 위험물을 저감하는 저장소</td><td>5개 이하</td></tr> <tr> <td>동일구 내에 있거나 상호 보행거리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써 저장소의 규모는 저장소의 위험물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제56조)이 정하는 저장소</td><td>옥외탱크저장소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td><td>30개 이하 10개 이하</td><td>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동일구 내에 있거나 상호 보행거리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 써 저장소의 규모 저장 위험 물 고 행 정 안 전 부 령 (제 56 조) 이 정 하 는 저 장 소</br></td><td>30개 이하 10개 이하</td></tr> <tr> <td></td><td>수정 사유</td><td>표 이론 오류</td><td></td></tr> </tbody> </table>	위치 · 거리	제조소등 구분	개 수	인적조건	동일구 내에	보일러, 냉난방설비를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7개 이상의 일반취급소	그 일반취급소에 공통한 위험물을 저감하는 저장소	7개 이하	동일구 내에 (일반취급소간 보행거리 300m 이내)	위험물을 차단되거나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5개 이상의 일반취급소	그 일반취급소에 공통한 위험물을 저감하는 저장소	5개 이하	동일구 내에 있거나 상호 보행거리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써 저장소의 규모는 저장소의 위험물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제56조)이 정하는 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30개 이하 10개 이하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동일구 내에 있거나 상호 보행거리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 써 저장소의 규모 저장 위험 물 고 행 정 안 전 부 령 (제 56 조) 이 정 하 는 	30개 이하 10개 이하		수정 사유	표 이론 오류	
위치 · 거리	제조소등 구분	개 수	인적조건																																																
동일구 내에	보일러, 냉난방설비를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7개 이상의 일반취급소	그 일반취급소에 공통한 위험물을 저감하는 저장소	7개 이하																																																
동일구 내에 (일반취급소간 보행거리 300m 이내)	위험물을 차단되거나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5개 이상의 일반취급소	그 일반취급소에 공통한 위험물을 저감하는 저장소	5개 이하																																																
동일구 내에 있거나 상호 보행거리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써 저장소의 규모는 저장소의 위험물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제56조)이 정하는 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30개 이하 10개 이하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동일구 내에 있거나 상호 보행거리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 써 저장소의 규모 저장 위험 물 고 행 정 안 전 부 령 (제 56 조) 이 정 하 는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동일구 내에 있거나 상호 보행거리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 써 저장소의 규모 저장 위험 물 고 행 정 안 전 부 령 (제 56 조) 이 정 하 는 	30개 이하 10개 이하																																														
	다음 각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5개 이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각 제조소들이 동일구 내에 위치하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을 것 각 제조소들에서 저작 또는 충분한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저장소 환경 3천배 미만인 것 다만 저장소의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선박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고정하기 위한 힘을 저감하는 저장소와 해당 선박주유취급소	5개 이하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다음 각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5개 이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각 제조소들이 동일구 내에 위치하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을 것 각 제조소들에서 저작 또는 충분한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저장소 환경 3천배 미만인 것 다만 저장소의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선박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고정하기 위한 힘을 저감하는 저장소와 해당 선박주유취급소	5개 이하																																															
	수정 사유	표 이론 오류																																																	
위치 · 거리	제조소등 구분	개 수	인적조건																																																
동일구 내에	보일러, 냉난방설비를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7개 이상의 일반취급소	그 일반취급소에 공통한 위험물을 저감하는 저장소	7개 이하																																																
동일구 내에 (일반취급소간 보행거리 300m 이내)	위험물을 차단되거나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5개 이상의 일반취급소	그 일반취급소에 공통한 위험물을 저감하는 저장소	5개 이하																																																
동일구 내에 있거나 상호 보행거리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써 저장소의 규모는 저장소의 위험물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제56조)이 정하는 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30개 이하 10개 이하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동일구 내에 있거나 상호 보행거리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 써 저장소의 규모 저장 위험 물 고 행 정 안 전 부 령 (제 56 조) 이 정 하 는 	30개 이하 10개 이하																																															
	수정 사유	표 이론 오류																																																	
29~29p (5) 정기점검의 내용 · 점검자 및 기록 · 유지 등	개념, 공식-설명	<p>(5) 정기점검의 내용 · 점검자 및 기록 · 유지 등</p> <table border="1"> <tr> <td>정기점검의 결과보고 (법제18조제2항)</td> <td>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td> </tr> </table>	정기점검의 결과보고 (법제18조제2항)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5) 정기점검의 내용 · 점검자 및 기록 · 유지 등</p> <table border="1"> <tr> <td>정기점검의 제출 (법제18조 제2항)</td> <td>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td> </tr> </table>	정기점검의 제출 (법제18조 제2항)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기점검의 결과보고 (법제18조제2항)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기점검의 제출 (법제18조 제2항)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 사유	표 이론 오류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37~37p ⑤ 탱크시험자에 대한 출입·검사 등	문항_삭제	<p>⑤ 탱크시험자에 대한 출입·검사 등</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자격기준</th></tr> </thead> <tbody> <tr> <td>검사권자</td><td>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td></tr> <tr> <td>검사 요건</td><td>위험물운반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td></tr> <tr> <td>출입·검사 사항</td><td>탱크시험자에게 탱크시험자의 등록 또는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의 상황·시험기구·장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음</td></tr> <tr> <td>위반시</td><td>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td></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수정 사유</p>	구분	자격기준	검사권자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검사 요건	위험물운반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입·검사 사항	탱크시험자에게 탱크시험자의 등록 또는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의 상황·시험기구·장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음	위반시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p>⑤ 탱크시험자에 대한 출입·검사 등</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규정내용</th></tr> </thead> <tbody> <tr> <td>검사권자</td><td>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td></tr> <tr> <td>검사 요건</td><td>위험물운반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td></tr> <tr> <td>출입·검사 사항</td><td>탱크시험자에게 탱크시험자의 등록 또는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의 상황·시험기구·장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음</td></tr> <tr> <td>위반시</td><td>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td></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수정 사유</p>	구분	규정내용	검사권자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검사 요건	위험물운반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입·검사 사항	탱크시험자에게 탱크시험자의 등록 또는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의 상황·시험기구·장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음	위반시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분	자격기준																														
검사권자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검사 요건	위험물운반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입·검사 사항	탱크시험자에게 탱크시험자의 등록 또는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의 상황·시험기구·장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음																														
위반시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분	규정내용																														
검사권자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검사 요건	위험물운반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입·검사 사항	탱크시험자에게 탱크시험자의 등록 또는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의 상황·시험기구·장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음																														
위반시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87~87p (2) 간이정비작업장 등의 설치기준	개념, 공식-설명	<p>(2) 간이정비작업장 등의 설치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도로경계선</th><th>도로경계선</th><th>고정주유설비</th></tr> </thead> <tbody> <tr> <td>자동차등의점검경비를 행하는 설비</td><td>4m이상</td><td>2m이상</td><td></td></tr> <tr> <td>자동차등 세정을 행하는 설비</td><td>증기세차기(증기세차기와 함께 설치한 경우) 출입구가 고정주유설비에 면하지 않도록 할 것</td><td></td><td>불연재료의 높이 1m이상의 담을 설치 담은 고정주유설비 4m이상</td></tr> <tr> <td>증기세차기 외의 세차기 경우</td><td>4m이상</td><td>2m이상</td><td></td></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수정 사유</p>	구분	도로경계선	도로경계선	고정주유설비	자동차등의점검경비를 행하는 설비	4m이상	2m이상		자동차등 세정을 행하는 설비	증기세차기(증기세차기와 함께 설치한 경우) 출입구가 고정주유설비에 면하지 않도록 할 것		불연재료의 높이 1m이상의 담을 설치 담은 고정주유설비 4m이상	증기세차기 외의 세차기 경우	4m이상	2m이상		<p>(2) 간이정비작업장 등의 설치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불연재료의 담</th><th>도로경계선</th><th>고정주유설비</th></tr> </thead> <tbody> <tr> <td>자동차등의점검경비를 행하는 설비</td><td></td><td>2m이상</td><td>4m이상</td></tr> <tr> <td>자동차등 세정을 행하는 설비</td><td>증기세차기(증기세차기와 함께 설치한 경우) 증기세차기 외의 세차기 경우</td><td>높이 1m이상 설치 2m이상</td><td>출입구가 고정주유설비에 면하지 않도록 할 것 담은 고정주유설비 4m이상</td></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수정 사유</p>	구분	불연재료의 담	도로경계선	고정주유설비	자동차등의점검경비를 행하는 설비		2m이상	4m이상	자동차등 세정을 행하는 설비	증기세차기(증기세차기와 함께 설치한 경우) 증기세차기 외의 세차기 경우	높이 1m이상 설치 2m이상	출입구가 고정주유설비에 면하지 않도록 할 것 담은 고정주유설비 4m이상
구분	도로경계선	도로경계선	고정주유설비																												
자동차등의점검경비를 행하는 설비	4m이상	2m이상																													
자동차등 세정을 행하는 설비	증기세차기(증기세차기와 함께 설치한 경우) 출입구가 고정주유설비에 면하지 않도록 할 것		불연재료의 높이 1m이상의 담을 설치 담은 고정주유설비 4m이상																												
증기세차기 외의 세차기 경우	4m이상	2m이상																													
구분	불연재료의 담	도로경계선	고정주유설비																												
자동차등의점검경비를 행하는 설비		2m이상	4m이상																												
자동차등 세정을 행하는 설비	증기세차기(증기세차기와 함께 설치한 경우) 증기세차기 외의 세차기 경우	높이 1m이상 설치 2m이상	출입구가 고정주유설비에 면하지 않도록 할 것 담은 고정주유설비 4m이상																												
143~143p 번호 : 10	문제-본문	10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외저장탱크와 특정 옥외저장탱크의 주하중과 종하중의 구분에 있어서 종하중에 해당하는 것은?	10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특정 옥외저장탱크 와 특정 옥외저장탱크의 주하중과 종하중의 구분에 있어서 종하중에 해당하는 것은?																												
		수정 사유	문제 오류																												
144~144p 번호 : 15	문제-문항	<p>15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의 저장기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p> <p>① 옥내저장소에서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4m를 초과하여 쌓지 아니해야 한다(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 외의 경우임).</p> <p>② 옥외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선반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6m를 초과하여 저장하지 아니해야 한다.</p> <p>③ 이동저장탱크에는 해당 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 품명, 최대수량 및 적재중량을 표시하고 잘 보일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p> <p>④ 이동저장탱크에 알킬알루미늄 등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20kPa 이하의 압력으로 비활성의 기체를 봉입한다.</p>	<p>15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의 저장기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0년 소방위</p> <p>① 옥내저장소에서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4m를 초과하여 쌓지 아니해야 한다(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 외의 경우임).</p> <p>② 옥외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선반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6m를 초과하여 저장하지 아니해야 한다.</p> <p>③ 이동저장탱크에는 해당 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 품명, 최대수량 및 적재중량을 표시하고 잘 보일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p> <p>④ 이동저장탱크에 알킬알루미늄 등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2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한다.</p>																												
		수정 사유	문제 오류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151~151p 번호 : 13	문제-문항	<p>13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화재예방과 재해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하여 작성하는 예방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p> <p>① 제조소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에서 지정수량의 10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예방규정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p> <p>②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의 관계인은 예방규정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p> <p>③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예방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p> <p>④ 예방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제공정안전보고서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와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p>	<p>13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화재예방과 재해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하여 작성하는 예방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p> <p>① 제조소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에서 지정수량의 10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예방규정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p> <p>②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의 관계인은 예방규정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p> <p>③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예방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p> <p>④ 예방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과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와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p>
		수정 사유	문제 오류
155~155p 번호 : 04	문제-본문	04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의한 동식물유류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수치는?	04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의한 동식물유류 등 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수치는?
		수정 사유	문제 오류
166~166p 번호 : 20	문제-본문	<p>20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내용은 무엇인가?</p> <p>①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으로 기술인력, 시설,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p> <p>② 기술인력은 위험물기능장 또는 위험물산업기사 1인 이상 등 4인</p> <p>③ 시설로는 전용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p> <p>④ 전용사무실은 $33m^2$ 이상이어야 한다.</p>	<p>20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내용은 무엇인가?</p> <p>①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으로 기술인력, 시설,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p> <p>② 기술인력은 위험물기능장 또는 위험물산업기사 1인 이상 등 4인</p> <p>③ 시설로는 전용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p> <p>④ 전용사무실은 $33m^2$ 이상이어야 한다.</p>
		수정 사유	문제 오류
171~171p 번호 : 14	문제-본문	<p>14 위험물 제조소에 옥내소화전 1개와 옥외소화전 1개를 설치하는 경우 수원의 수량을 얼마 이상으로 확보해야 하는가? (단, 위험물 제조소는 단층 건축물이다)</p> <p>① $5.4m^3$ ② $10.5m^3$</p> <p>③ $21.3m^3$ ④ $29.1m^3$</p>	<p>14 위험물 제조소에 옥내소화전 1개와 옥외소화전 1개를 설치하는 경우 수원의 수량을 얼마 이상으로 확보해야 하는가? (단, 위험물 제조소는 단층 건축물이다)</p> <p>① $5.4m^3$ ② $10.5m^3$</p> <p>③ 34.8m3 ④ $29.1m^3$</p>
		수정 사유	문제 오류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182~182p 번호 : 10	문제-본문	<p>1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p> <p>① 위험물취급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지름이 200m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p> <p>② 철 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p> <p>③ 펌프설비 또는 1일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인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p> <p>④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p>	<p>1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p> <p>① 위험물취급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지름이 2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p> <p>② 철 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p> <p>③ 펌프설비 또는 1일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인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p> <p>④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p>
		수정 사유	문제 오류
262~262p 번호 : 06	문제-본문	<p>06 제조소등별로 설치해야 할 경보설비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옥내저장소의 규모 등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p> <p>① 저장창고의 연면적 150m² 초과하는 것</p> <p>② 지정수량 150배 이상인 것</p> <p>③ 처마의 높이가 6m 이상의 단층건물의 것</p> <p>④ 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p>	<p>06 제조소등별로 설치해야 할 경보설비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옥내저장소의 규모 등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p> <p>① 저장창고의 연면적 150m² 초과하는 것</p> <p>② 지정수량 150배 이상인 것</p> <p>③ 처마의 높이가 6m 이상의 단층건물의 것</p> <p>④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p>
		수정 사유	문제 오류
271~271p 번호 : 14	문제-본문	<p>14 다음 중 위험물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으로 알맞은 것은?</p> <p>① 안전거리는 기념물 및 보물에 있어서는 50m 이상 두어야 한다.</p> <p>② 보유공지의 너비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일 때는 5m 이상 보유해야 한다.</p> <p>③ 옥외설비의 바닥의 둘레는 높이 0.1m 이상의 턱을 설치하여 위험물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한다.</p> <p>④ 배출설비의 1시간당 배출능력은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m²당 16m³ 이상으로 할 수 있다.</p>	<p>14 다음 중 위험물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으로 알맞은 것은?</p> <p>① 안전거리는 지정문화 유산 및 천연기념물에 있어서는 50m 이상 두어야 한다.</p> <p>② 보유공지의 너비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일 때는 5m 이상 보유해야 한다.</p> <p>③ 옥외설비의 바닥의 둘레는 높이 0.1m 이상의 턱을 설치하여 위험물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한다.</p> <p>④ 배출설비의 1시간당 배출능력은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m²당 16m³ 이상으로 할 수 있다.</p>
		수정 사유	문제 오류
286~286p 번호 : 18	문제-본문	<p>18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p> <p>①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 또는 응급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p> <p>②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p> <p>③ 정기점검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p> <p>④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p>	<p>18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p> <p>①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 또는 응급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p> <p>②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p> <p>③ 정기점검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p> <p>④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p>
		수정 사유	문제 오류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335~335p 번호 : 14	해설	<p>14 수원 ·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 = N(최대 5개) × 7.8m³(260L/min × 30min) ·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 = N(최대 4개) × 13.5m³(450L/min × 30min)</p> $\therefore \text{수원} = \text{옥내} + \text{옥외} = (1개 \times 7.8\text{m}^3) + (1개 \times 13.5\text{m}^3) = 21.3\text{m}^3$	<p>14 옥외소화전은 방호대상물(당해 소화설비에 의하여 소화하여야 할 제조소등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각 부분(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1층 및 2층의 부분에 한한다)에서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이 경우 그 설치개수가 1개일 때는 2개로 하여야 한다.</p> <p>따라서 수원의 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 = N(최대 5개) × 7.8m³ (260L/min × 30min) •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 = N(최대 4개) × 13.5m³ (450L/min × 30min): 1개일때는 2개를 설치 $\therefore \text{수원} = \text{옥내} + \text{옥외} = (1개 \times 7.8\text{m}^3) + (2개 \times 13.5\text{m}^3) = 34.8\text{m}^3$																														
		수정 사유	해설 오류																														
336~336p 번호 : 23	해설	<p>23 저장 · 취급 위험물의 주의사항</p> <table border="1"> <thead> <tr> <th>품명</th> <th>황화인</th> <th>과산화나트륨</th> <th>알킬알루미늄</th> <th>나이트로글리셀린</th> </tr> </thead> <tbody> <tr> <td>유별</td> <td>제2류</td> <td>제1류 알칼리 과산화물</td> <td>제3류</td> <td>제5류</td> </tr> <tr> <td>주의사항</td> <td>화기주의</td> <td>물기엄금</td> <td>물기엄금</td> <td>화기엄금</td> </tr> </tbody> </table>	품명	황화인	과산화나트륨	알킬알루미늄	나이트로글리셀린	유별	제2류	제1류 알칼리 과산화물	제3류	제5류	주의사항	화기주의	물기엄금	물기엄금	화기엄금	<p>23 저장 · 취급 위험물의 주의사항</p> <table border="1"> <thead> <tr> <th>품명</th> <th>황화인</th> <th>과산화나트륨</th> <th>알킬알루미늄</th> <th>나이트로글리셀린</th> </tr> </thead> <tbody> <tr> <td>유별</td> <td>제2류</td> <td>제1류 알칼리 과산화물</td> <td>제3류</td> <td>제5류</td> </tr> <tr> <td>주의사항</td> <td>화기주의</td> <td>물기엄금</td> <td>물기엄금</td> <td>물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td> </tr> </tbody> </table>	품명	황화인	과산화나트륨	알킬알루미늄	나이트로글리셀린	유별	제2류	제1류 알칼리 과산화물	제3류	제5류	주의사항	화기주의	물기엄금	물기엄금	물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
품명	황화인	과산화나트륨	알킬알루미늄	나이트로글리셀린																													
유별	제2류	제1류 알칼리 과산화물	제3류	제5류																													
주의사항	화기주의	물기엄금	물기엄금	화기엄금																													
품명	황화인	과산화나트륨	알킬알루미늄	나이트로글리셀린																													
유별	제2류	제1류 알칼리 과산화물	제3류	제5류																													
주의사항	화기주의	물기엄금	물기엄금	물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																													

일부 정오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수정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표 교체

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